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0나638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손OO (441128-2691218)

대구 동구 신암동

원고, 항소인

1. 권*1 (690422-2691614)

울산 동구 전하동

2. 권*2 (700106-1691613)

대구 남구 대명동

3. 권*3 (740225-1691613)

대구 동구 신암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OO (540118-1928211)

대구 동구 신천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09. 12. 22. 선고 2008가단47180 판결

변 론 종 결

2010. 6. 16.

판 결 선 고 2010. 7.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손OO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손OO에게 349,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8.부터 2010.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손OO의 나머지 항소, 원고 권*1, 권*2, 권*3의 각 항소, 피고의 원고 손OO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손OO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 손OO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권*1, 권*2, 권*3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권*1, 권*2, 권*3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손OO에게 108,570,662원, 원고 권*1, 권*2, 권*3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5.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손OO에게 45,500,000원, 원고 권*1, 권*2, 권*3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5.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손OO에 대하여 1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손OO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망 김복순(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6. 5. 18. 12:20경 피고 소유의 대구 8거7792호 봉고더블캡 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휴게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대구 07-5141호 크레인 중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망인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사고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손OO은 좌측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에는 망인, 원고 손OO 및 차금수, 심란옥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망인, 차금수, 심란옥은 무속인이고, 원고 손OO은 종전부터 망인에게

수차례 곳을 의뢰하는 등 망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원고 손OO의 의뢰에 따라 산제를 지내기 위하여 평소 잘 알고 있던 피고로부터 사고 차량을 빌려 심란옥, 차금수를 대동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소재 암자에서 밤새워 산제를 지낸 후 대구로 돌아오던 중 발생한 것이다.

(3) 원고 권*1, 권*2, 권*3은 원고 손OO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

(1) 피고는 원고 손OO의 필요에 의하여 사고 차량의 운행이 이루어졌거나 원고 손OO과 망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사고 차량을 운행한 것이므로, 원고 손OO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과 관련하여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러

한 자는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손OO으로부터 산제를 의뢰받은 망인이 피고로부터 사고 차량을 빌려 산제를 지낸 후 운전하여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손OO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그 운전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그를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손OO으로서도 망인이 자신과 함께 밤을 새워 산제를 지내는 등 과도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 수 있었으므로 동승자로서 망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이에 반하여 원고들은, 망인은 산제를 올리는 동안 방에서 잠을 잤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잠을 자지 못하여 피곤하거나 졸린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차금수의 증언은 을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원고 손OO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을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특별히 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직업, 소득

○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손OO이 식당조리사로 근무하며 월 1,70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68세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손OO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경북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소재 '도자기에 손국시'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2006. 3. 2.부터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손OO이 상시 계속적으로 위 식당에 근무하며 월 1,700,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위 원고의 연령과 위 식당에서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전춘자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월 소득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손OO의 연령이 이미 통상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가동연한을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간 위 업무에 더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나) 입원기간 :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07. 8. 17.까지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슬관절, 견관절, 척골신경 운동제한 등 : 맥브라이드 장애율표상 관절강직 항목 중 슬관절란의 II-2 영구 12%, 관절강직 항목 중 견갑관절란의 II-A-4 한시 2년 18%, 말초신경 항목 중 I-B-3-b-(1) 한시 3년 16% 상실

② 다발성능골골절 후유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기침 등 : 맥브라이드장해율표 상 흉곽의 손상과 질병 항목 중 I-A 영구 11% 노동능력상실

③ 입원기간 중에는 10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이후에는 위 각 장애의 중복장해율인 46.04%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각 적용한다.

[인정근거] 다통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24호증, 제1심 증인 전춘자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성형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신체감정보완촉탁의 각 결과, 제1심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장 및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계산 : 23,545,369원

(2) 기왕치료비 : 1,971,730원 (다통 없는 사실)

(3) 향후치료비

○ 원고 손○○은 반흔교정술을 위하여 5,370,000원, 금속제거술을 위하여 3,500,000원을 지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0. 6. 17.(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9개월 뒤이다)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인정근거] 제1심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성형외과, 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계산 : 7,365,648원 (4,459,248원 + 2,906,400원)

(4) 개호비

○ 제1심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신체감정보완촉탁의 각 결과에 의하면 원고 손OO은 이 사건 사고 이후 6주일(42일)간 도시보통인부 1인(1일 8시간 기준)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1호 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간병인으로부터 개호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계산 : 2,386,524원

나.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90%

다. 공제

○ 피고를 대리한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지출한 치료비 등 32,718,410원 중 원고 손OO의 과실비율(10%) 상당액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들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2) 결정금액 : 원고 손OO 10,000,000원, 원고 권*1, 권*2, 권*3 각 5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손OO에게 손해배상금 38,470,502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38,121,31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5.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2.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349,191원(38,470,502원 - 38,121,31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5.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7.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 권*1, 권*2, 권*3에게 각 손해배상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5.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2.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① 제1심 판결 중 원고 손OO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손OO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손OO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원고 손OO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② 제1심 판결 중 원고 권*1, 권*2, 권*3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권*1, 권*2, 권*3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정 _____

 판사 서영애 _____

 판사 허용구 _____

